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다”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장	오보언 (044-204-7451)
	중소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영 (044-204-7576)



붙임**중소기업 범위 및 졸업 유예제도 개요**

□ 중소기업 범위

-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규모 기준

- ①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400 ~ 1,500억원) 이하

구분	매출기준	제조업(업종수)	비제조업(업종수)
그룹1	1,500억원	금속, 펄프, 전기장비 등(6)	-
그룹2	1,000억원	전자통신, 기계, 자동차 등(12)	도소매, 건설, 광업, 농림어업 등(6)
그룹3	800억원	음료, 인쇄, 시계, 기타 등(6)	운수, 하수처리, 출판정보(3)
그룹4	600억원	기계·장비수리업(1)	보건, 과학기술, 사업지원 등(5)
그룹5	400억원	-	숙박음식, 부동산, 금융보험, 교육(5)

- ② 상한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 것(업종 무관)

독립성 기준

- ③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이 발행주식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최대주주인 기업 제외
- ⑤ 관계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 초과시 제외

중소기업 유예

-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년간(→ 개정후 5년) 유예**
* 유예제외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유예를 받은 기업 등

□ 졸업유예 제도 개정안 (2024. 8. 21, 시행)

- (유예기간)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유예제외) 개별 기업에 유예가 1회만 적용 가능하여,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음
 - 다만,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